

#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84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9년 6월 17일  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동 조례에서 잘못된 문장과 어문규범, 상위법과 다른 내용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, 현재 서울시에는 출자기관이 없으므로 개정하고자 하는 '투자·출자·출연'을 '투자·출연기관'으로 현행대로 수정하고 그 외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시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삽입함(안 제5조제5항).

## 3. 참고사항 : 없음.

##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4호 중 “투자·출자·출연기관”을 “투자·출연기관”으로 하고,

안 제8조의2 중 “임기만료 전”을 “임기가 끝나기 전”으로 하며,

안 제17조제1항 중 “부서 장”을 “부서장”으로 “투자·출자·출연기관”을 “투자·출연기관”으로 한다.

## 〈 수정안조문대비표 〉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. 1. ~ 3. (생략) 4. “공공기관”이란 서울특별시(이 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<u>투자·출연기관</u> 을 말한 다. 5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. 1. ~ 3. (생략) 4. ----- ----- ----- <u>투자·출자·</u> <u>출연기관</u> -----. 5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. 1. ~ 3. (생략) 4. ----- ----- ----- <u>투자·출연기관</u> -----. 5. (생략)
제8조의2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<u>임기만료 전</u> 이라도 해당 위원 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	제8조의2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<u>임기만료 전</u> 이라도 해당 위원 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	제8조의2(위원의 위촉 해제) ----- ----- ----- -- <u>임기가 끝나기 전</u> ----- ----- ---.
제17조(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 ① 시장은 시 본청 홍보 담당 <u>부서 장</u>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하고, 직속기 관, 사업소, <u>투자·출연기관</u> 에는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분임국어책임관으로 둔다.	제17조(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 ① 시장은 시 본청 홍보 담당 <u>부서 장</u>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하고, 직속기 관, 사업소, <u>투자·출자·출</u> <u>연기관</u> 에는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직 원을 분임국어책임관으로 둔 다.	제17조(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 ① ----- ----- <u>부서장</u> ----- ----- ----- <u>투자·출연기관</u> ----- ----- -----. -----